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998
----------	-------

발의연월일 : 2025. 8. 5.

발 의 자 : 한창민 · 정혜경 · 손 솔
신장식 · 용혜인 · 윤종오
황운하 · 김재원 · 최혁진
김종민 · 김남근 · 서미화
김선민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적인 고용계약관계로 포괄할 수 없는 노무제공자 등은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함. 이에 따라 이들은 직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크고,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피부양자 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고용보험법」에서 노무제공자,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참조하여 현행법에서도 노무제공자, 예술인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공단이 업무대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받은 기관이 업무를 위임한 사업장의 보험사무를 대행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보험사무의 대행은 보험사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건강보험 가입자격, 건강보험료 납부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된 사항을 대행하는 것으로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자격, 대행할 수 있는 보험사무의 범위 등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현행법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건강보험 관련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은 직장가입자가 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
(안 제3조의2 신설).
- 나. 적용대상사업장에 포함되거나 제외된 사실의 신고,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상실의 신고 등 건강보험 관련 각종 보험사무를 대행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정 근거를 명시하고, 그 업무범위를 규정함[안 제3장의2(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6까지) 신설].
- 다. 노무제공계약 또는 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이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계약해지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93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제3조의3으로 하고,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 적용을 받는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 같은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 및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근로자 및 사용자로 본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제3조의2제1항”을 “제3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3장의2(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보험사무대행기관

제40조의2(보험사무대행기관) ①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는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적용대상사업장이 된 사실, 제7조제1호에 따른 신고 내용이 변경된 사실,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및 가입자의 보수월액 등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사업주가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사무”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및 법인등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인등이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법인등(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수탁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공단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소재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려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보험사무를 중단한 경우
3. 보험사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업무가 전부 폐지되거나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보험사무대행기관은 폐지신고일 또는 지정취소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⑦ 그 밖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3(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공단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보험료의 납입의 고지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함으로써 그 사업주에 대한 고지를 갈음한다.

제40조의4(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공단이 제78조의2에 따른 가산금, 제80조에 따른 연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사유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0조의5(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사무에 관한 사항을 적은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0조의6(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93조의 제목 중 “근로자”를 “근로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사

용자”를 “사용자(노무제공자 또는 예술인과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한다)”로, “해고나”를 “해고나 계약해지, 계약연장 거절 또는”으로 한다.

제97조제1항 중 “사용자”를 “사용자,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한다.

제119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 ⑤ 제40조의5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보험 업무대행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업무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4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조의2(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 적용을 받는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 같은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 및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근로자 및 사용자로 본다.</u>
<u>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생략)</u>	<u>제3조의3(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현행 제3조의2와 같음)</u>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 ----- ----- -----

회(이하 “심의회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1.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심의회에 한정한다)

2. ~ 6. (생략)

② ~ ⑦ (생략)

<신설>

<신설>

-----.

1. 제3조의3제1항-----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3장의2 보험사무대행기관

제40조의2(보험사무대행기관) ①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
된 단체, 「민법」 제32조에 따
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
는 세무사(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는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적용대상사업장이 된 사
실, 제7조제1호에 따른 신고 내
용이 변경된 사실, 가입자 자격
의 취득·상실 및 가입자의 보
수월액 등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사업주가 공단에 대하여 하
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이
하 “보험사무”라 한다)를 대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무
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및 법인등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② 법인등이 보험사무를 대행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지정
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법인등(이하 “보험사무대행기
관”이라 한다)이 지정받은 사
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수
탁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공단
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소재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
다.

④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1항
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
부를 폐지하려면 공단에 신고
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

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보험사무를 중단한 경우

3. 보험사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업무가 전부 폐지되거나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보험사무대행기관은 폐지신고일 또는 지정취소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⑦ 그 밖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3(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공단은 보험료, 이

<신 설>

<신 설>

법에 따른 그 밖의 보험료의
납입의 고지 등을 보험사무대
행기관에 함으로써 그 사업주
에 대한 고지를 갈음한다.

<신 설>

제40조의4(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공단이 제78조의2에 따
른 가산금, 제80조에 따른 연
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하는 경우에 그 징수사유가 보
험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한도 안
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40조의5(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보험사무대행기
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보험사무에 관한 사항
을 적은 장부나 그 밖의 서류
를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
다.

제40조의6(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공단은 보험사
무대행기관이 제40조의2제1항
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한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할 수

제93조(근로자의 권익 보호) 제6
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업
장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
자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가 이
법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자신이 부담
하는 부담금이 증가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
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
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다.

제97조(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
부장관은 사용자,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가입자의 이
동·보수·소득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
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⑧ (생략)

제119조(과태료) ③·④ (생략)

있다.

제93조(근로자 등의 권익 보호)

-----사용
자(노무제공자 또는 예술인과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
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한다)-----

-----해고
나 계약해지, 계약연장 거절 또
는-----.

제97조(보고와 검사) ① -----
-----사용자, 보험사무
대행기관-----

-----.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19조(과태료) ③·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과 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⑤ 제40조의5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 은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 ----- ----- -----.
---	---